

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

제정 2002. 7. 15 규칙 제1125호
일부개정 2015. 12. 18 규칙 제1438호(안양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
일괄정비 규칙)
일부개정 2018. 4. 4 규칙 제1498호(안양시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
한자어 일괄정비 규칙)
일부개정 2020. 1. 31 규칙 제1554호(안양시 규칙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
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, 제명개정)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0. 1. 31>

제2조(지원결정) 「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준은 안양시생활보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심의·의결한다. <개정 2020. 1. 31>

제3조(대여금 상환) 조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한 사업자금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상환을 개시하며,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

제4조(대여신청 등) ①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금의 대여 또는 이차보전을 받고자 하는 자활공동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활공동체는 5만원이상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있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. 다만, 신용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보증의 경우에는 보증한도를 용자원금의 100분의 110 이상으로 한다.

③ 제2항의 재정보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.

제5조(대여자금의 관리) 시장은 대여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·비치하여야 한다.

1.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여자금 관리대장 (별지 제3호서식)
2.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여자금 상환카드 (별지 제4호서식)

제6조(체납자 조치) ① 시장은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대여받은

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

자가 상환금을 체납한 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촉구하고,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재정보증인에게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입을 촉구하여야 한다.
<개정 2018. 4. 4>

②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그 납입을 촉구하여도 상환금을 납입하지 아니 할 때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<개정 2018. 4. 4>

제7조(감면조치) 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 감면에 의한 의결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5. 12. 18 규칙 제1438호 안양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4. 4 규칙 제1498호, 안양시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. 1. 31 규칙 제1554호, 안양시 규칙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뒷면)

기초생활보장기금대여자금사용계획서		
대상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차상위계층 <input type="checkbox"/> 자활공동체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	
사업현황		
대여자금 사용용도		
향 후 사업계획		
대여자금 사용일정	일정	계 획
	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후	
대여자금 상환계획		

[별지 제2호서식]

재정보증서

○채무자 주소:
성명:
주민등록번호:

○용자액 일금 원정 (₩)

위 사람이 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(기초생활보장기금)의 대
여금을 상환 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대보증채무를 변상할 것을 보증합
니다.

년 월 일

보증인 성명:
주민등록번호:
주소:

안 양 시 장 귀하

구비서류

인감증명서 1부
과세증명서 1부

[별지 제3호서식] <개정 2015. 12. 18>

기초생활보장기금 대여자금 관리대장

구분 번호	용자 일시	신청자			연대보증인			대여금액	용도	상 환 개시일	비고
		성 명	생년월일	주소	성 명	생년월일	주소				

[별지 제4호서식] <개정 2015. 12. 18>

(앞면)

기초생활보장기금 대여금 상환카드

- | | |
|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채무자 <li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□ 성명 <li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□ 생년월일 <li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□ 주소 <li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□ 전화번호 ○ 용자일시 ○ 용자금액 ○ 용자개시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대보증인 <li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□ 성명 <li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□ 생년월일 <li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□ 주소 <li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□ 전화번호 <li style="margin-top: 20px;">○ 상환만기예정일 |
|--|--|

구 분 회 수	일 자	상 환 내 용				취 급 자 인
		계	원 금	이 자	원 금 잔 액	

